

- 구미시금고 운용상황 및 주요 설계변경 공사 실태파악 -

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년월일 : 2007. 4.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장

1. 주 문

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3 및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“구미시금고 운용상황 및 주요 설계변경 공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”를 구성한다.

2. 제안이유

- 구미시금고 운용상황 등을 점검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,
- 또한, 주요 설계변경 공사의 공사비 원가산정 적정여부 등을 파악 투명한 금고운용과 명확한 원가산정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임.

3. 내 용

가. 구성인원 : 9명 (위원장1, 간사1, 위원 7)

나. 활동기간 : 2007. 4. ~2007. 7. (3개월간)

다. 존속기간 :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

라. 활동내용

- 구미시금고 운용상황 및 주요 설계변경 공사(총 공사비 2억이상, 2006. 11. 1부터 현재까지) 관련 자료요구
- 관련 공무원 답변 청취 및 현장방문 실시
- 기타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등